

대한장연구학회 의료정책 및 보험 기획과제 연구비

제정: 2019년 7월 16일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합리적 의료와 국민 건강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장연구 분야의 의료정책 및 보험 관련 과제에 대한 연구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장연구학회 의료정책 및 보험 기획과제 연구비'라고 한다.

제3조 지급대상

지급대상의 연구과제는 의료정책, 영양 급여 및 국내 역학 관련 연구를 포함하는 장질환 연구 과제를 공모하여 결정한다.

제4조 지급대상자의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장연구학회 평생회원 중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회원으로서 5년 이내에 대한장연구학회 공식학회지 Intestinal Research에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이어야 하며, 동일한 연구과제로 이와 유사한 다른 연구비 또는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한다.

제5조 추천구비서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따로 정하는 날까지 본 연구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서 (소정양식)
- 2) 이력서
- 3) 연구계획서, 연구업적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저서 및 논문 등의 파일)

제6조 연구과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제1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당해년도 회장과 위원장이 위촉한 5명 내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항. 심사위원회는 공고 시 발표되는 심사 기준에 따라 해당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3항.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연구과제 결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연구자 및 과제를 대한장연구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8조 연구비 지급

본 연구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연구자에게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제9조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연구결과는 수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제학술지(SCI, SCIE 등재지) 혹은 Intestinal Research 에 대한장연구학회 의료정책 및 보험 기획과제 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을 밝혀서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비 환수

제4조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제9조 연구비 수혜자 의무를 위배할 경우 연구비 전액을 환수한다.

제11조 부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거나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